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1월 정례회의 회의록

■ 회의개요

- 회 의 명 :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1월 정례회의
- 일 시 : 2020. 1. 9.(목) 18:00
- 장 소 : 성산읍 주민자치센터(2층 회의실)
- 회 의 명 :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1월 정례회의
- 참 석 : 주민자치위원(20명), 성산읍장 외 3명

■ 회의결과

□ 제 1호의안 [2020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연간운영계획]

- ✓ 주민자치위원회 핵심사업 추후 회의 진행간 일정 및 내용 구체화
⇒ 원안 가결

□ 제 2호의안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세칙변경의건]

- ✓ 1장 제 5조(감사의보고) : (수정) 본위원회의 감사는 12월중 실시하며
- ✓ 2장 제 6조(감사의보고) : (수정) ⑥ 재무담당: 위원회의 재무 및 예산집행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 원안 수정 가결(세부내용 후첨)

□ 기타의안 [최형식 위원 해촉의건]

- ✓ 관련법령
 - ①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21조 1항의 5
⇒ 그밖에 위원으로서의 회의 및 교육참석 등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
 - ②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22조 3항
⇒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1항의 3
⇒ 위원회 정기회의 및 봉사활동에 년 3회 이상 불참한 의원
- ✓ 의결결과
 - 주민자치위원 28명중 20명 참석(과반이상의참석)
 - 주민자치위원 28명중 20명 참석(과반이상의참석)
 - ⇒ 제 9기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최형식위원 해촉의건 가결

결	담당자	담당	부읍장	읍장
재	고준현	김민우	최상민	김동원

■ 회 의 록	
정희석 총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원보고 • 개회 및 국기에 대한 경례
인사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인사말씀 • 읍 장 인사말씀
정희석 총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은 의안채택 순서입니다. 제 1호의안 「2020년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연간운영계획」, 제2호의안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세칙변경의 건」 이 상정되었음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정영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에도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택 분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9기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최형식위원의 해촉의 건을 제안합니다. 조례상으로는,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상 직무를 해태하였다 판단됩니다.
이화금 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자치위원회 행사가 1년중 많이 있는데, 참여가 저조한 위원들이 있어서 행사진행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많이 힘든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병택 분과장님이 발의하신 최형식위원의 해촉의건을 상정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영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병택 분과장님이 발의하여 주신 최형식위원의 해촉의건을 제3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채택에 동의하십니까?
전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합니다.
정영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형식위원의 해촉의건을 추가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호 의안 2020년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의건입니다. 올해 예산 반영액을 토대로 연간운영계획을 작성하였고, 계획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지금 의견을 주십시오.

■ 회 의 록

<p>오영삼 의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부담이 많은 사업들인데, 자부담 마련 방안 이라던지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3개의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자부담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회의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박강자 부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예산 반영액을 토대로 1년간의 운영계획을 잡은 상태일 뿐이지 오늘 하루만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차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구체화 시키는 방안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p>전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합니다.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렇다면 제 1호의안 「2020년도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연간운영계획」 의건은 상세한 일정은 추후 구체화 해나가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p>제 1호의안 ➡ 원안가결</p>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다음 안건으로는 제 2호의안 「성산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 변경의건」 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세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오영삼 위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안건으로 올라온 1장 제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위원회의 감사는 __월__일날 실시하며, 선출은 __월 정례회의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체적인 감사선출은 출범시에 정하므로, 불필요한 조항삽입이라고 생각합니다.

■ 회 의 록

<p>이화금 의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감사는 __월__일날 실시하며 라는 조항을 넣기 보다는, 12월중 실시한다 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p>정덕숙 분과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장의 5조와 6조의 상정의건도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무담당을 女부위원장으로 정하기 보다는 ‘1인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재무의 역할에서도 女부위원장 내용을 삭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해 주신대로, 감사의 경우엔 저희 9기가 출범하면서 선출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p>전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합니다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연말에 실시하므로 구체적인 일자를 잡는 것 보다도, 이화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월중 실시한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p>전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합니다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호의안에 마지막으로, 재무담당의 조항에 女부위원장 조항을 삭제하여 통과하는데 동의하십니까?
<p>전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합니다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그렇다면, 제 1장 5조와 2장 5·6조의 변경의건은 회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호의안 ➡ 원안수정가결

■ 회 의 록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은 제 3호의안 「최형식 위원의 해촉의견」 입니다.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촉의견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관련 법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첫째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21조 1항의 5] 위원으로서 회의 및 교육 참석 등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② 둘째로[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제22조 3항]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셋째로[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1항의 3] 위원회 정기회의 및 봉사활동에 년 3회 이상 불참한 의원 해임할수 있다.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항을 근거로 최형식위원 해임의견 투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조례에 따라 현재 투표에 참가하는 위원 20명중 최소 14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해임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총무위원님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정희석 총 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최형식 위원의 해임의견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읍사무소 주민자치팀에서는 해당위원을 해촉하고 통보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p>주민자치 담 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읍정홍보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p>정영진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없으시면 폐회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산읍 주민자치위원회 1월 정례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제 3호의안 ➡ 가결(최형식위원 해촉)